

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

의 안 번 호	1769
------------	------

2024년 4월 30일  
교 통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 안 자 : 이종배 의원 외 18명

나. 제안일자 : 2024년 4월 3일

다. 회부일자 : 2024년 4월 8일

라. 상정일자

○ 제323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(2024년 4월 30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이종배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현재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해서만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있어 정산과정이 번거롭고, 해당 카드를 소지하지 못한 경우 실제 다자녀 가족임에도 감면을 받지 못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 사례가 발생해 왔음
- 이에 주차요금의 감면 대상에 바로녹색결제시스템 각 호의 자격이 확인되는 주차장 이용자를 추가함으로써 실물 카드 미소지로 인해 주차요금을 감면받지 못했던 시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

#### 나. 주요골자

- 주차요금 감면 가능한 경우에 바로녹색결제시스템 각 호의 자격이 확인되는 주차장 이용자를 추가함(안 제7조제1항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주차장법」 등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참조)

다. 입법예고

- 기 간 : 2024.4.12. ~ 2024.4.16.
- 제출의견 : 의견없음

## 라. 관련부서 의견조치 결과<sup>1)</sup>

- 서울시장(교통정책과): 원안가결
  - 바로녹색결제시스템을 통한 주차요금 자동감면 혜택 지원이 가능하여 시민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바, 원안 동의

---

1) 주차계획과-4613('24.4.18.) “제323회 임시회 의원발의 의안에 대한 의견제출”

## 4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장훈)

### 가. 개요

- 동 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시 증빙서류 미확인 대상에 ‘바로녹색결제시스템’<sup>2)</sup>으로 비대면 자격확인이 되는 주차장 이용자를 추가함으로써 주차장 이용요금 정산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

### 나. 검토의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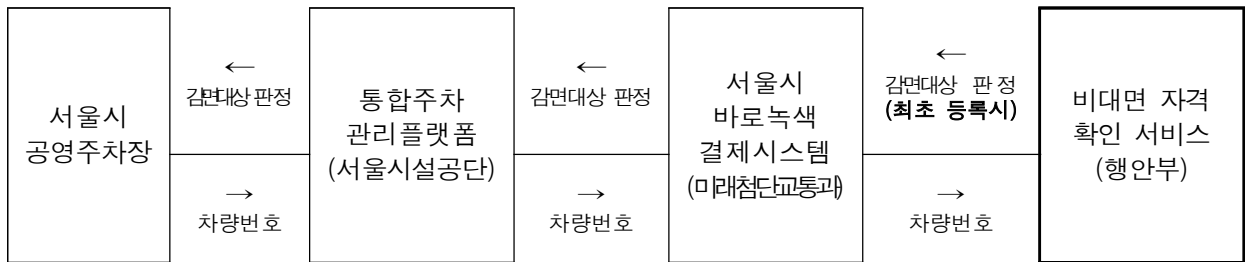
- 서울시는 남산 1·3호터널, 공영주차장, 민자도로 등 교통 관련 공공시설 이용시 사전에 결제수단을 등록하여 자동으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‘바로녹색결제시스템’을 구축하여 지난 ’19년부터 운영하고 있음
- ‘바로녹색결제시스템’은 사용자가 바로녹색결제 홈페이지에 차량번호, 카드번호를 사전등록하면 해당 시설이용시 차량번호 자동인식 및 사전등록한 카드로 자동결제가 되는 시스템으로 ’23.9월 기준 바로녹색결제 사이트 등록자는 55,404명<sup>3)</sup>이고, 최근 3년간 공영주차장 바로녹색결제 누적 이용건수는 2,086,896건임

2) 바로녹색결제: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에 따른 과태료 조회와 공영주차장(서울시, 서울시 중구청, 서울시 영등포구청, 서초구청) 주차료, 남산1.3호 터널혼잡통행료(과태료), 민자도로(신월여의지하도로, 서부간선도로)등을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여 확인결제, 자동결제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

3) 교통정보과 ‘자동차통행관리플랫폼’연계를 통한 가입자 정보기준(’23.9.30.기준)

- 현행 조례에서 감면대상 18개 항목 중 자동 감면되는 항목은 5개에 불과<sup>4)</sup>하여 실제 현장에서 감면대상자의 실물카드 부재 및 주차요원 부재시 감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존재하고 있음
- 동 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 감면대상자<sup>5)</sup>의 감면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서울시 ‘지갑 없는 주차장’<sup>6)</sup> 정책에 맞춰 바로녹색결제시스템으로 감면 자격이 확인되는 주차장 이용자를 추가하여 자동감면 근거 마련을 통해 감면대상자의 이용 편의 증진 및 감면 사각지대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

※참고 : 바로녹색시스템 연계를 통한 자동감면 추진(계획)



4) 주차장요금 즉시감면이 가능한 항목: 장애인, 국가유공상이자, 고엽제후유증환자(고엽제후유의증환자), 경차, 저공해차

5) 「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 제7조(주차요금의 감면 등) ① 시장은 제6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. 이 경우, 주차시간측정계기를 통한 주차장 이용자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.  
1. ~ 14. (생략)

6) 지갑 없는 주차장: 결제수단 및 감면증빙서류 없이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이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새로운 주차 서비스

- 다만 바로녹색결제시스템을 통한 자동감면을 위해서는 해당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들과 감면대상을 일일이 연계하는 등 실제 감면 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시스템 연계·구축·보완 등의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 이후 시행 시기를 정확히 조정할 필요가 있고, 사전에 충분한 홍보 등을 통해 기존 시민에게 정확한 감면정보 제공이 동반되어야 할 것임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#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(이종배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769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4년 04월 03일  
발 의 자: 이종배 의원(1명)  
찬 성 자: 김경훈, 김길영, 김영철,  
김재진, 김춘곤, 김혜영,  
박상혁, 박춘선, 송경택,  
신동원, 옥재은, 이병운,  
이상욱, 최민규, 최윤희  
의원(15명)

### 1. 제안이유

- 현재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해서만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있어 정산과정이 번거롭고, 해당 카드를 소지하지 못한 경우 실제 다자녀 가족임에도 감면을 받지 못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 사례가 발생해 왔음.
- 이에 주차요금의 감면 대상에 바로녹색결제시스템 각 호의 자격이 확인되는 주차장 이용자를 추가함으로써 실물 카드 미소지로 인해 주차요금을 감면받지 못했던 시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주차요금 감면 가능한 경우에 바로녹색결제시스템 각 호의 자격이 확인되는 주차장 이용자를 추가함(안 제7조제1항).

### 3. 참고사항
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타 : 신 구조문대비표

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후단 중 “주차시간측정계기를 통한”을 “주차시간측정계기 또는 바로녹색결제시스템으로 각 호의 자격이 확인이 되는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 후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<p>제7조(주차요금의 감면 등) ① 시장은 제6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. 이 경우, <u>주차시간측정계기를 통한</u> 주차장 이용자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.</p> <p>1. ~ 14. (생략)</p> <p>②·③ (생략)</p>	<p>제7조(주차요금의 감면 등) ① ---- ----- ----- -----, ---- - <u>주차시간측정계기 또는 바로녹색결제시스템으로 각 호의 자격이 확인이 되는</u> ----- -.</p> <p>1. ~ 1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

#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

### 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다동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해서만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있어 정산과정이 번거롭고, 해당 카드를 소지하지 못한 경우 실제 다자녀 가족임에도 감면을 받지 못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 사례가 발생해, 주차요금의 감면 대상에 바로녹색결제시스템 각 호의 자격이 확인되는 주차장 이용자를 추가함으로써 실물 카드 미소지로 인해 주차요금을 감면받지 못했던 시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

### 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     재정분석담당관

담    당    관      오희선

추계세제팀장      이정수

추   계   분   석   관      김지혜

☎ 02-2180-7953

e-mail : kjh0123@seoul.go.kr

**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**